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내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1천만원,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44조제1항제1호	700만원
나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44조제1항제2호	700만원
다.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명한 경우	법 제44조제1항제3호	700만원
1)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임명한 경우		700만원
2) 민영교도소등의 장 외의 직원을 임명한 경우		600만원
라. 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4조제2항제1호	350만원

마.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4조제2항제2호	350만원
바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4조제2항제3호	350만원
사.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4조제2항제4호	300만원
아.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4조제3항제1호	200만원
자.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4조제3항제2호	200만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 <u>1. 법 제44조제1항제1호 ·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</u> <u>2. 법 제44조제1항제2호 ·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: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</u>	<u>제2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교정기획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805